

반도체 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처리 건의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310호
2. 제 안 자 : 홍국표 의원(찬성자 16명)
3. 제안일자 : 2022년 10월 17일
4. 회부일자 : 2022년 10월 21일

2. 주 문

- 반도체 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8월 4일 ‘반도체 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주도로 발의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사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함.

3. 제안이유

- 지난 8월 4일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주도로 발의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신규 생산설비 구축에 따른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 등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담긴 법안임.

- 올해 3분기 세계 반도체 시장 1위 자리를 대만에 내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현실에 비춰 볼 때 해당 법안의 통과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나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 자국 반도체 산업의 육성과 보호에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반도체 선진국들과의 경쟁에 뒤처질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반도체 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의된 해당 법안의 조속한 심사를 진행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것임.

4. 이송처 :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건의안의 개요

- 건의안은 반도체 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¹⁾(이하 “「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하고자 제안됨.

1) 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6775호)

나. 「첨단전략산업법」의 입법 동향

-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이 미래 먹거리 신산업이자 국가의 경제안보와 직결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첨단전략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
 - 중국은 1조 위안(약 187조원)에 이르는 자금투자와 반도체 기업에 최대 10년간 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중국제조 2025’를 발표(2015.5.18.)함.
 - 미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에 약 527억달러 규모의 보조금과 240억 달러 규모의 투자세액공제 등 총 2,800억 달러(약 370조원) 규모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반도체 지원 및 과학법」(CHIPS²⁾ and Science Act of 2022)을 제정(2022.7.29.)함.
- 이에 정부는 2021년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및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2022년 8월 「첨단전략산업법」을 제정·시행하게 됨.
- 이 법률은 ▶ 전략산업 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 및 관리, ▶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특례, ▶ 전략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및 기반조성, ▶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2) CHIPS: 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 구체적으로는 특화단지에 대한 각종 인·허가, 민원 등의 신속처리와 부담금 감면혜택, 전략산업기업에 대한 재정·세제지원, 전략기술 관련 우수 인재양성을 위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경쟁국가들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규모 집중투자과 인재양성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세제 지원과 인재양성, 각종 규제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게 됨.
- 이에 따라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 ▶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국가산업단지의 우선 지정, ▶ 특화단지 운영 지원 및 입주기관 지원 강화, ▶ 특성화대학 지정 범위 확대,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수도권 학생정원 총량규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에 발의됨³⁾.

다. 건의안의 필요성

- 미-중 간의 패권경쟁이 첨단전략산업 분야까지 확대되면서 EU, 대만 등의 주요 첨단산업국가들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기술 핵심 품목의 역내 생산기지 구축, 공급망 진영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반도체는 가전, 통신, 자동차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활용

3) 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안 외에도 유사한 목적으로 5건(송석준, 박성중, 양금희, 이동주, 김한정)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되면서 ‘21세기 산업의 쌀’ 이라고 불리는 첨단전략 품목이며, 세계 각국의 기술패권경쟁에서 경제적 생존과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가 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메모리 반도체⁴⁾와 파운드리(Foundry)⁵⁾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으나 시스템 반도체와 설계(fabless)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음.
- 그러나 올해 3분기부터 삼성전자가 대만 TSMC(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에 세계 반도체 매출 1위를 내주고, 주요 국가에서 파격적인 반도체산업 지원 법률을 통과시키면서 국내 반도체 산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음.

< 국가별 반도체 관련 지원 법률 현황 >

국가	법률명	지원규모
미국	반도체 지원 및 과학법	2,800억 달러(약 370조원)
중국	중국제조 2025	1조 위안(약 187조원)
EU	유럽반도체지원법	450억 유로(약 62조원)
일본	경제안보법	7,740억엔(약 8조원)

- 국회에 발의된 「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들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 전략기술보유자에 대한 지원, ▶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인·허가 등의 신속처리, ▶ 전략산업등의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4) 반도체는 크게 정보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메모리 반도체와 정보를 처리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스템(비메모리) 반도체로 구분됨.
 5) 설계와 기술 개발을 배제하고 반도체 위탁생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을 의미함. 이와 반대로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설계와 기술 개발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를 ‘팹리스(fabless)’라고 함.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발의 현황 >

의원명	주요내용
송석준 (2022.6.16.)	- 반도체 등 전략기술과 관련된 대학의 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설립과 전략기술과 관련된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이전 허용 및 각종 지원 특례 - 부담금 감면 근거 마련
박성중 (2022.8.4.)	-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직접 설치 근거 마련
양금희 (2022.8.31.)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 마련 - 주 52시간제 적용예외 근거 마련 -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인재양성
이동주 (2022.10.13.)	- 전략기술 관련 산업기술보호법 연계 조항 삭제(중복규정 해소) - 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목적외 사용 처벌조항 개선
김한정 (2022.11.22.)	- 반도체공장 신속 설립을 위해 인·허가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재량권 축소 - 인허가 간주제도 신설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 마련 -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 관련 학과 정원 조정 근거 마련 - 전략산업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공무원의 임용 자격기준, 겸임, 겸직, 휴직 등에 대한 특례 신설

- 이들 개정안들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생정원 총량규제 완화를 확대하는 내용 외에는 여·야간의 큰 이견은 없음.
- 이에 따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이 의결되고(2022.12.15.) 이후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과 연동하여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설비 투자를 하는 대기업에게 6%의 세액

공제 혜택(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을 부여하는 현행 법률보다 상향된 20%의 세액공제 혜택(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을 부여하면서 대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과 기획재정부와의 견해 차이로 인해 의결이 지연되고 있음.

- 시급한 국정현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건의안의 의의와 시의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본 건의안이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이송되기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에는 건의안의 목적과 대상을 상실하게 됨.
- 한편, 건의 대상 법률을 「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으로 한정하기 보다는 반도체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까지 포함함으로써 반도체 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라는 건의안의 목적과 대상 법률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담당 조사관	연락처
최범준	02-2180-8058